

사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운영 동의안 심사보고

1. 심사 경과

- 제 출 : 2007. 6. 8.(사천시장)
- 회 부 : 2007. 6. 8.(총무위원회, 의안번호 제50호)
- 상 정 : 2007. 6. 19.(제115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상정, 보류)
2007. 9. 17.(제116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상정, 의결)

2. 제안설명 요지(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귀자)

가. 제안이유

현행 사천시가 직접운영하고 있는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수혜대상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과 다양한 재활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장애인 재활프로그램 운용 전문 인력을 확보 운영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을 선정하여 위탁운영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위탁운영 대상시설

가) 수혜자 : 5,846명(2007. 1. 1.현재)

나) 시설현황

- 시설명 : 사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 위치 :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536-17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05. 9. 1. ~ 2006. 7. 13.
- 사업비 : 3,300백만원(국 450, 도 1,025, 시 1,825)
- 시설규모
 - 부지면적 : 18필지 9,767㎡(2,954평)
 - 건물면적 : 1,494.22㎡(452평)(지하1층 : 183.42, 지상 1층 : 627.68, 지상2층 : 683.12)

다) 년 소요예산 : 552백만원 정도

라) 시설종사자 정원 및 기구

- 근거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33조 [별표 4]
- 관리 및 운영요원 배치기준 : 20명 이상
- 직제 표준안

구 분	일 반 직						기능직			고용직
직 급	관 장	사무국장	1급	2급	3급	4급	5급	1종	2종	
직 위	관 장	사무국장	팀장(1~3급 중에서 정함) 및 팀원							

2) 위탁운영 계획

가) 근 거

-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 사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 내지 제6조
- 사천시장애인복지관설치및관리조례 제 8조

나) 시 기 : 2007. 8월 경

다) 방 법 : 위탁법인 공개모집

라) 위탁법인의 자격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써 재정 능력, 사업수행능력, 공신력, 후원회 운영능력 등이 높고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재원부담이 가능한 법인

마) 위탁기간 : 3년간(재위탁 가능)

바) 위탁사무

- 『사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에 근거한 사무
- 기타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업
- 장애인복지관 시설 및 비품 관리

사) 위탁조건

- 장애인복지법등 위탁사무와 관련된 각종 법령 및 지침 준수
- 『사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및 위·수탁 협약사항의 준수

- 『사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 및 운영조례』 의 규정 준수
- 장애인복지관의 시설 공간을 목적사업 이외의 타용도 사용금지
- 장애특성별(시각,청각,지체,정신지체,뇌병변 등) 필수프로그램 운영
- 기타 위탁자가 정하는 사항의 준수
- 아) 위탁법인 선정 (9명이내)
 - 심사방법 : 서류 및 면접심사 병행
 - 심 사 원 : 수탁법인선정심의위원회
 - 심사내용
 - 서류심사 : 평가조서에 의거 수탁응모 법인이 제출한 서류 평가
 - 면 접 : 시설운영계획 설명 및 질의답변 평가
- 자) 위탁법인 선정심사항목
 - 법인설립의 취지 및 목적 ○ 재정 부담능력 유무
 - 사업수행능력 ○ 사업 계획의 적정성 등
- 차) 수탁법인 결정
 - 수탁법인선정위원회에서 심사평과한 결과 최고 득점자(법인)
 - 수탁법인선정 심사대상이 단일법인일 경우 총점대비 60%이상 득점법인 (미달할 경우 결격처리)

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사회복지사업법」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 「사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 「사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조례」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최진기)

- 사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운영 동의안은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때 자치사무의 경우 시의회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절차를 이행하는 내용임

- 동의를 받고자 하는 시설은 용현면 덕곡리 536-17번지 일원에 2006. 7. 13 완공하여 현재 시가 직접 운영하고 있음.
- 검토의견으로는
 - 도내 7개 시군(우리시 포함)에 설치 운영 중인 장애인종합복지관의 경우 우리시를 제외한 6개 시군 전부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 수혜대상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이고, 내실있는 서비스 제공은 물론 업무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위탁운영에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 위원	질의 내용	답변자	답변 내용
이삼수 위원 (제115회 제1차 정례회 중)	○ 당초 1년정도 직영한 후 장·단 점을 파악, 위탁할 계획이었던 데 1년이 안 된 것 같음. ○ 위탁법인 선정시 신중을 기하 여 공정하게 해야 할 것임.	주민생활 지원과장 임귀자	○ 1년 정도 직영할 계획이었으나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 여 위탁 운영코자 함.
탁석주 위원 (제115회 제1차 정례회 중)	○ 3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건립한 시설로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조치 필요. ○ 현장방문, 타지역 사례 등을 종합한 후 위탁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	○ 위탁운영이 바쁘지는 않지 만 필요인력 미확보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많고, 서비 스 제공에도 문제가 많이 있 음.

질의 위원	질의 내용	답변자	답변 내용
이정희 위원 (제115회 제1차 정례회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140여 개 시설 중 대부분 위탁 운영하고, 직영은 6개 시군에서 하고 있다고 했는데 직영시 장·단점을 파악한 후 검토 필요함. ○ 수탁기관선정위원회의 위원은 6인 이상 9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하므로 인원 조정이 필요함 	주민생활 지원과장 임귀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영시설 방문 장단점 파악 후 자료 활용하겠음. ○ 수탁법인선정위원의 수는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명시되어 있음.
김유자 위원 (제115회 제1차 정례회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탁자선정시 지역제한 없이 전국으로 할 경우 서울 등 원거리에 있는 법인이 선정되면 운영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탁자 대상은 현재 확정된 것이 없음. ○ 검토하겠음.

5. 토론요지

토론자 (발언자)	토론내용(발언내용)	비고
이삼수 위원 등 (제115회 제1차 정례회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앞으로 6개월 정도 시직영 운영한 후 개선 필요 사항 등을 파악한 후 ○ 직영하고 있는 타지역 시설과 위탁시설을 현지방문한 후 재검토 처리할 수 있도록 보류하였으면 함. 	
이삼수 위원 (제116회 임시회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행부에서 장애인종합복지관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을 구입하지 말고 수탁자가 확정된 후 구입하도록 촉구하는 것이 바람직함. 	

토 론 자 (발언자)	토론내용(발언내용)	비 고
탁석주 위원 (제116회 임시회 중)	○ 집행부의 위탁기관선정위원 9인에 대한 구성(안)을 사전에 제출 요구함.	
이정희 위원 (제116회 임시회 중)	○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위원수는 우리시 조례에서 6~9인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조례 개정 없이도 추가로 늘리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므로 추후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 없음